

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

사업주



안전·보건교육

- 정기교육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
- 유해·위험 작업 전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
- ⚙️ 건설일용노동자 채용 시 :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


안전·보건표지

- 유해·위험 시설과 장소에 대한 경고, 비상 조치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·부착



안전·보건조치 및 보호구 지급

- 유해·위험방지(추락·붕괴·낙하 등)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조치의무
- ⚙️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의 지급·착용조치 의무



위급상황 시 작업중지 및 대피

- 화재·폭발·추락·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 및 노동자 대피
-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후 작업 재개
-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



산업재해 발생 보고

-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, 질병자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
-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유선 등 보고

노동자



교육 참석과 실천

-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·보건교육 참석
-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으로 실천



안전·보건표지 준수

- 유해·위험 시설과 장소에 설치·부착된 금지·경고·지시·안내 표지 준수



안전·보건조치 준수 및 보호구 착용

- 안전시설물 제거·훼손 금지
-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
- ⚙️ 지급받은 안전모·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



위급상황 시 작업중지 및 대피

-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
-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
-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



신고 및 응급조치

-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, 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고용노동부(지청),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

위험상황 발생 시 신고 방법

위험상황신고실(고용노동부)



1588-3088
24시간 신고 가능

안전신문고(행정안전부)



인터넷(PC) 또는
신문고 앱(스마트폰)으로 신고



산업재해 및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

회사명 _____ 안전보건관리책임자

성명 _____ 에게 연락바랍니다.

연락처 _____

* 동 포스터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할 경우 법령 요지 게시로 갈음될 수 있음.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